

17대 국회 입법예상 농업관련 법안

17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농업관련 법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업인 삶의 질 향상법)

한·칠레 FTA 체결과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따른
쌀 농업축소 정책 그리고
DDA협상과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우리 농업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다.
이러한 농정현실에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하루 빨리 풀어나가야만 우리 농업과 농민 그리고
나라 전체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7대 국회의 역할이 아주 크다.
이번 호에서는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국회가 해결해야 될 주요 농업관련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지난 2월 한·칠레 FTA가 통과되면서 부수적으로 통과된 민생법안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해 있는 농촌주민들과 농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 중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농어업인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게끔 제정되었으나 거주지역을 제한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법’ 제3조 제2호에서는 ‘농림어업인에 해당될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3조 제1호 제1목에 따르면 ‘도농통합시의 동(洞)지역 중 상업·공업·주거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은 복지혜택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 동법의 시행령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불합리한 조항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30%씩 지원하기로 하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료 지원에만 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치지 못한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국민연금, 산재보험형식의 공제, 영유아보육비 등 다른 많은 복지부분도 하루 빨리 바뀌어야 된다. '삶의 질 향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당위성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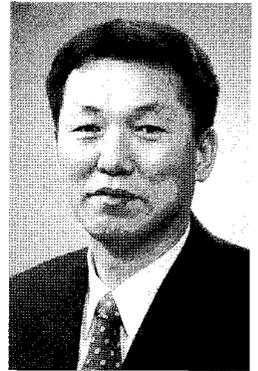
따라서 다음 달 개원 예정인 17대 국회에서 어려운 농가 현실을 이해하고 반드시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명시를 위한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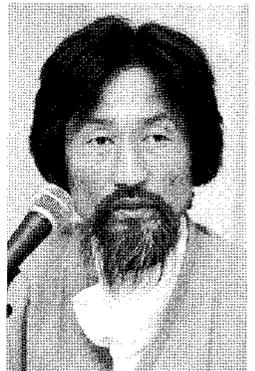
지난 5월 6일 미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국내 쌀산업 보호와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농가 소득 보장 등 양정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남북통일과 식량주권 차원에서 식량자급률은 농업·농촌 기본법상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주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식량자급률 35%, 쌀자급률 100%의 목표치를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농민운동가 출신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지난 17대 총선거에서 3명의 농민대표가 당당히 국회에 입성했다. 다음달부터 국회에서 쟁점이 될 주요 농업관련 법안들 제·개정함에 있어 농민 중심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기를 기대해 본다



박홍수 의원(열린우리당)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입법예상 농업관련 법안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99년에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식료자급 목표치 45%를 설정해두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농업·농촌 기본법'에 주곡 및 식량자급의 목표 설정을 하고 실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 및 예산과 정책 마련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4년 쌀 협상과 DDA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설정하겠다는 입장만 제시할 뿐이다.

아직 입법예고안 조차 없는 실정이지만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충격을 최소화 한다는 명목아래 결정된 추곡수매가 4%인하안이 오는 6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에 있다. 농가소득 지지 정책 개선이 미흡한 속에서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은 추곡자급 기조 유지에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현재 정부는 우리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간 한농연은 무차별한 수입농산물의 학교급식을 차단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과 지역조례제정운동을 펼쳐왔으며,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법 개정운동에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은 국내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향후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 함양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법안이다.



▲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가 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 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자 '전라남도운동본부'가 이를 규탄하며 행자부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국 9,989개 학교의 654만여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이런 우리의 아이들에게 유전자조작식품(GMO)이나 농약과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산 농산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명제를 WTO에 위배된다고 방치해 둘 수는 없다.

학교급식에서 식재료의 국내농산물 의무사용과 정부의 재정지원근거 조항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에서도 지역주민과 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조례제정운동을 펼쳐내야 한다.

농민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협동조합 건설을 위한 '농협법' 개정

작년 10월 4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17대 국회의 뒤편으로 넘어왔다. 핵심 쟁점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 시도지역본부장 선출직 전환 등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농림부와 법제처의 입법예고안 수정 작업 결과,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1년간 자체 연구·조사를 실시한 뒤 전문가들과의 상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삽입시켜 개혁 의지의 후퇴가 문제시되고 있다. 1시군 1조합 지역의 시군지부 폐지 및 금융지점 전환 등 전국농민연대와의 합의 사항도 농협중앙회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를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을 지키기 위해 3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밝혀, 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사업 중심의 관리형 조직에서 경제사업 위주의 활동형 조직으로 농협중앙회 및 회원농축협을 전환시켜내지 못한다면, 지속되는 농업 위기 속에서 국산 농축산물 및 농민들의 입지는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농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농정활동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농협중앙회 조직의 쇄신과 사업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 농협법 개정안은 바로 그러한 시대적 요청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방향을 잡아나가야 마땅할 것이다.

아래의 표에 현재까지의 농협법 개정 동향 및



● 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

구분	입법예고	농민단체
농협중앙회장 명예직화	비상임 전환	비상임 전환
교육지원사업 전담제	전무이사제 도입	전담 전무이사 신설
집행간부 임면권	대표이사가 임면	대표이사가 임면
직원 인사교류	신용·경제 직원 간 금지	신용·경제 직원 간 금지
사업연합회 도입	도입	도입
소수조합원 권리 강화	총회소집청구권 등	총회소집청구권 등
잉여금 배당제도 도입	이용고 배당 우선	이용고 배당 우선
신경분리 시한	1년간 농협자체 마련	3년 내 완료
품목조합연합회 보완	지역조합 준회원 가입	지역조합 회원가입 허용

주1) 입법예고안은 2004년 2월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향후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다소간의 수정·보완이 있을 수도 있음

● 향후 주요 요구사항

과제	세부내역
시도 지역본부장 선출	조합장 중 선출
시군지부 폐지	합병진전에 따라 폐지

향후 관찰시켜야 할 과제를 정리해 놓았다. 한농연은 이같은 농협법 개정 방향을 견지하여 농민중심적인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법' 개정

현재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비농민 농지소유를 확대 허용하여 농촌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부채 증가·농가소득 하락 등 농촌경제 여건이 날로 나빠지고 있고, 고속철도 개통 등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 출신 부동산 투기 세력의 농지 잠식이 심화되고 있다. 이 속에서 추진중인 정부의 농지제도 개선 방침은, 농민들의 실익 증진과는 상관없이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배만 불러주는 부정적 결과만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핵심 농업생산수단으로서 농지가 지니는 특수성과 공공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번 전용된 후에는 농지로 다시 바꾸기가 매우 어려울뿐더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지제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한정된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하여 다음 세대 이후의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쌀 및 식량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농촌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농지의 소유·이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농지은행'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부채가 많은 농가들의 농지 및 자산을 '농지은행'에서 인수하되, 해당 농민에게는 경작권 및 농축산물의 처분권을 부여함으로써 농민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농연

